

## 2023년 일반직 신입 채용공고문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3년 일반직 신입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채용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http://www.ncs.go.kr) 참조)





## I

## 모집개요

## 1. 모집단위 및 인원

(단위 : 명)

모집분야	직군/직급	주요직무	모집단위	인원
① 일반직 (신입)	사무	경영관리/경영지원/마케팅	경영	2
			경제	1
			회계	2
			기계	6
	기술	설비운영/건설	전기	6
			화공	4
			건축	2
			토목	6
② 사회형평 (장애인)	사무	경영관리/경영지원/마케팅	경영	2
			기계	1
			전기	1
③ 고졸인재	기술	7급	설비운영	기계 4 전기 3
계				40

※ 직무 세부내용은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조

※ 근무지 : 한국가스공사 전국 사업장

## 2. 지원자격

 모집분야 ①, ② 공통 지원자격

연령	▶ 제한 없음(단,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
학력/전공	▶ 제한 없음
결격사항	▶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첨부#1)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 2023.11.6.(월)부터 근무가능한 자 ▶ 기술직군의 경우는 성별무관 교대근무 가능 ▶ <u>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월일 등) 또는 어학정보 등 입력 오기자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u> ▶ 자격,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일 : 접수마감일(2023.8.10.)



##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 ① 일반직(신입)

외국어 (영어)	▶ 토익 750점 이상 수준의 유효 영어성적 보유자 <sup>1)</sup> (2021.9.10.부터 응시하고 2023.8.10. 접수마감 0전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의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유효 영어성적 점수표

토익	텝스	토플	오픽	토익스피킹 <sup>2)</sup>
750점 이상	285점 이상	85점 이상	IM2 이상	IM2 이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듣기평가를 제외한 점수가 토익 375점 이상, 텁스 171점 이상

### ② 사회형평(장애)

외국어 (영어)	▶ 토익 500점 이상 수준의 유효 영어성적 보유자 <sup>1)</sup> (2021.9.10.부터 응시하고 2023.8.10. 접수마감 0전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의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유효 영어성적 점수표

토익	텝스	토플	오픽	토익스피킹 <sup>2)</sup>
500점 이상	195점 이상	56점 이상	IM1 이상	IM1 이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듣기평가를 제외한 점수가 토익 250점 이상, 텁스 117점 이상

| 유의사항 | ▶ 모집분야 구분에 관계없이 일반직(신입)과 동일근무 및 동일대우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 해당사항 반드시 입력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본인대상의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본인대상의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1) 공사 직무수행(도입·계약, 해외사업, 국제기술기준 및 매뉴얼 등)을 위해 외국어(영어) 능력 필요  
2) 토익스피킹 성적체계 개편(2022.06.04.)을 반영하여 토익스피킹 기준변경

### ③ 고졸인재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없음</li> <li>※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여부 확인 후 임용결정</li> <li>▶ 단,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일 것</li> </ul>
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li> </ul>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sup>1)</sup>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li> <li>* <u>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지원불가</u></li> <li>*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 지원 가능하되, 졸업가능학점 까지 신청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 가능한 경우는 지원불가</li> <li>* 면접전형 시 학력 확인 서류(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서류 등) 필수 제출 요구되며, 미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됨. 또한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의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여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 응시 불가</li> </ul> </li> </ul>
결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첨부#1)</li> <li>▶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11.6.(월)부터 근무가능한 자</li> <li>▶ 성별무관 교대근무 가능한 자</li> <li>▶ <u>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월일 등)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u></li> <li>▶ 자격,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기준일 : 접수마감일(2023.8.10.)</li> </ul>

1)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 이수요건 충족이 예정되어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자

II

**전형절차**

※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단계	주요 내용	평가기준	비고
원서 접수	<input type="checkbox"/> 기간 : 2023.8.4.(금) 10:00~2023.8.10.(목) 10:00 <input type="checkbox"/> 방법 : 인터넷 접수( <a href="http://www.kogas.or.kr">http://www.kogas.or.kr</a> ) <span style="color:red;">※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span>	<input type="checkbox"/> 최종제출 완료하여야 입사지원한 것으로 간주	필기시험장 수도권, 대구, 대전 중 택1)
↓ 서류 전형	<input type="checkbox"/> 평가내용 : 지원자격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합격자 발표 : 2023.9.11.(월) 17:00 이후 예정 <input type="radio"/> 공사 홈페이지(필기장소, 시간 및 준비물 안내 등)	<input type="checkbox"/> 지원자격(적부)	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 전형	<input type="checkbox"/> 일자 : [기술직군] 2023.9.23.(토) 예정 [사무직군, 고졸인재] 2023.9.24.(일) 예정 <input type="checkbox"/> 내용 : NCS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인성검사 <span style="color:red;">※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 미소지시 응시불가</span> <input type="checkbox"/> 합격자 발표 : 2023.10.11.(수) 17:00 이후 예정 <input type="radio"/> 공사 홈페이지(면접장소,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 등)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적부)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적합자 중 NCS직업기초능력(50%) +직무수행능력(50%) +가점 합산 고득점순	모집인원의 2~5배수선발 ·1명모집:5배수 ·2명모집:3배수 ·3명이상:2배수
↓ 면접 전형	<input type="checkbox"/> 자기소개서 등록 (직업기초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input type="radio"/> 등록기간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span style="color:red;">※ 미등록 시 면접전형 만점의 10% 감점</span> <input type="checkbox"/> 일자 : 2023.10.18.(수)~2023.10.24.(화) 中 하루 예정 <input type="checkbox"/> 내용 : 직무PT면접 및 직업기초면접 <input type="radio"/> 필기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안내(제출서류 진위확인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span style="color:red;">※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응시불가</span> <input type="checkbox"/> 합격자 발표 : 2023.11.2.(목) 17:00 이후 예정 <input type="radio"/> 공사 홈페이지(합격자 정보입력, 향후일정 안내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확인(적부) <input type="checkbox"/> 직무PT면접(50%) +직업기초면접(50%) +가점 합산 고득점순	모집인원의 1배수선발
↓ 수습 채용	<input type="checkbox"/> 임용일자 : 2023.11.24.(금) 예정(수습기간 3개월) <input type="radio"/> 직무교육 후 근무지 배치 예정 <input type="checkbox"/> 연수원 입소일 : 추후 안내 예정 <input type="radio"/> 기초연수 <input type="radio"/> 신원조사, 제출서류 확인 등	<input type="checkbox"/> 신원조사(적부)  <input type="checkbox"/> 연수 수료여부(적부)	조건부 임용  60점 미만 미수료 처리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우선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장애인 ⇒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필기총점(가점 합산) 고득점자 ⇒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1) 필기시험장소(수도권/대구/대전)는 지원서 최종제출 시간기준 선착순 마감(단,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되어 공지될 수 있음)

### III 우대사항

※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력 요함 (미입력 시 우대불가)

모집분야	대상	우 대 내 용	비고
①, ②	고급자격증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전형 시 어학성적 충족조건 면제 및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에서 만점의 10% 가점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2 참조</li> <li>• 과락 시 미적용</li> </ul>
①	본사이전 지역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본사이전 지역인재의 합격자인원이 목표인원에 미달 시 추가합격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3 참조</li> <li>• 과락 시 미적용</li> </ul>
<b>① 일반직 (신입)  ② 사회형평 (장애인)  ③ 고졸인재</b>	<b>사회 형 평 적 채 용</b>	<b>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이며, <u>취업 지원대상자증명서</u> 필수 제출</li> </ul> </li> </ul>	
		<b>장애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u>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본인대상)</u> 또는 <u>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본인대상)</u> 필수 제출</li> </ul> </li> </ul>	
		<b>저소득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기초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 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로, <u>수급자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한부모기초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u> 필수 제출</li> </ul> </li> </ul>	1개 이상 과목 점수 4할미만 시 미적용
		<b>북한이탈 주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u>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u> 필수 제출</li> </ul> </li> </ul>	
		<b>다문화 가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기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u>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u>, 부모의 <u>훈인관계증명서</u>,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허가를 받은자의 경우 <u>기본증명서(상세)</u> 또는 <u>재적등본</u>, 결혼이민자(외국인)의 경우 <u>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u>) 필수 제출</li> </ul> </li> </ul>	
		<b>경력단절 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서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u>, <u>가족관계증명서</u> 필수 제출</li> </ul> </li> </ul>	
		<b>자립준비 청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18.8.10. 이후)인 자로서, <u>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u> 필수 제출</li> </ul> </li> </ul>	

- 1) 우대사항은 중복적용 가능하나, 고급자격증 다수 보유 시 1개만 적용하며,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사항은 중복해당 시 더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 2) 사회형평적 채용은 관련법에 의해 우대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②사회형평(장애인) 모집분야는 4명 미만일 경우도 가점부여
- 3)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부여
- 4)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공고일(2023.7.26.) 이후 발급분에 한함(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 IV

## 전형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 □ 필기전형 안내

- 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 적격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
- NCS직업기초능력(10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직무수행능력(100점) : 직무수행시 필요한 전공관련 지식(첨부#4) 평가

## ※ 필기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NCS직업기초능력 4할미만 또는 직무수행능력 4할미만시
- NCS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합산 평균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 □ 면접전형 안내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자기소개서 등록(미등록시 면접전형 만점의 10% 감점)
- 직무PT면접(100점) :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 또는 상황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 시간(약20~30분)동안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 작성 후 주제 발표
- 직업기초면접(100점) : 공사 핵심가치,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

## ※ 면접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면접 4할미만 또는 직무(PT)면접 4할미만시
- 직업기초면접 + 직무(PT)면접 합산 평균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 □ 기초연수 안내

- 연수태도 및 기초연수평가 : 연수원 입소시 사전 공지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미만시 미수료 처리



## □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

구분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면접일정 및 집합장소</li><li>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안내 등</li><li>면접전형 시 자기소개서 제출안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수원 입소일 및 준비물</li><li>합격자 사진등록 및 정보입력 등</li></ul>
불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적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적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li></ul>

\* 전형별 지원자 경쟁률 현황은 알리오 공시를 참고

## □ 이의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
- 신청기한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00:00까지

##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당일 요청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편의지원 신청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관한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운영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 적격자 : 과락,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 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일 전일(2023.11.23.(목)예정)까지 입사포기각서(첨부#6)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 〈입사포기각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 연수원 입소 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 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

-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간 구제

###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구제
  - (필기전형)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자기 채용 동일분야에 면접 전형기회 부여(1회 限)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피해자는 즉시 면접심사에 추가합격시키고 신원조사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 처리

**VI**

## 유의사항

###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우리공사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자가 입사이후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 □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채용비리 발생 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바랍니다.

- 본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분야 및 모집단위, 일반직 경력 및 별정직 모집공고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 시 업로드하는 모든 서류는 암호화 해제하여야 하며, 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암호화 주의)
- 입사지원 시 본사이전 지역인재의 지역 정보 입력은 본사이전 지역 인재 확인을 위한 자료이며,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민등록상 생월일을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각 채용전형 진행 시 본인 확인용도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내역 조회를 위하여 생년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제출 후 지원서 확인을 통해서 제출여부 및 지원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전에 지원서 수정 및 지원서 확인이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지원서 확인이 불가하며, 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여야 최종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관련 지원자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 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또는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가 발견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 시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단,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모집단위별 지원자 최소배수인원 미달 시에도 적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실시합니다.

## VII

## 기 타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자의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첨부 #7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방문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스캔하여 [recruit@kogas.or.kr](mailto:recruit@kogas.or.kr)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초임등급은 내규에 따라 해당 직급의 기준등급으로 하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2년 한도로 1년에 1등급을 가산합니다.
- 공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차기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채용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일반직 신입 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콜센터(02-2025-2844, 2845), 오전9시 ~ 오후6시
  - \* 채용홈페이지(<https://kogas.saramin.co.kr>) Q&A
- (지원자격 변경가능 사전안내) KOGAS는 창의형 글로벌 인재확보를 위해 2024년 이후 신규채용 시 기준어학성적을 상향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드립니다.



첨부#1

##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삭제 2021.11.16.>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 · 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첨부#2

## 고급 자격증

**자격증 인정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사무직군**

- 변호사(해외변호사 포함),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AICPA 포함), 공인노무사, 법무사

**기술직군**

- 모집단위 해당 기술사, 기능장, 변리사\*

모집단위	기술사	기능장
기계	가스,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 기계안전,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설비, 소방, 소음진동, 용접	가스, 건설기계정비, 기계가공,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전기	가스,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소방,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자응용	가스, 전기, 전자기기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공안전	가스, 위험물
건축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배관
토목	건설안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

\* 변리사 자격은 모집단위 무관 공통 우대 적용

※ 해당 모집단위 지원 시 서류전형 어학성적 충족조건 면제 및 필기 전형 (직무수행능력)에서 만점 기준 10% 가점 부여

※ 우대사항 적용은 적격자\*에 한하며, 다수의 고급자격증 보유 시 1개만 적용

\* 적격자 : 과락,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첨부#3

## 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관련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 (참고#1)
- 채용인원이 6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30% 채용목표제 적용
  - 대상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sup>1)</sup> 졸업(예정)자<sup>2)</sup>
- 우대내용 :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30%) 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단,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는 제외)  
ex)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가점) 80점일 경우  
☞ 채용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 추가합격자 선정기준
  -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50%)+직무수행능력(50%)+가점 합산 고득점순
  - (면접전형)직업기초면접(50%)+직무PT면접(50%)+가점 합산 고득점순

\*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본사이전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구 또는 경북지역 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입사지원시 반드시 입력(체크)하여야 하며, 미입력 시 우대불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단, 사이버대학은 제외)

2) 접수마감일(2023.8.10.)기준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하고, 면접전형당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뜻함.



참고#1

## 본사이전 지역인재 우대 관련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0. 24., 2019. 11. 26.〉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③ (이하 생략)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23., 2018. 2. 27., 2020. 5. 12., 2022. 1. 25.〉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5.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첨부#4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출제범위

구분		출제 범위
사무 직군 (6급)	경영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론, 인사론, 재무회계, 관리회계 등
	경제	경제학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계량경제, 화폐금융, 재정학, 경제정책 등
	회계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등
기술 직군 (6급)	기계	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재료와 제조공정, 기계시스템해석, 열전달, 수치해석, 진동공학 등
	전기	전자기학, 회로이론, 신호및시스템, 전자회로, 제어공학, 전기기기 및 제어, 전력전자공학 등
	화공	화공양론, 열전달, 물질전달, 화공열역학, 반응공학, 공정제어 및 설계, 유체역학, 환경공학 등
	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등
	토목	토목시공학, 토질 및 기초, 철근 및 P.S.콘크리트공학, 응용역학, 측량학 등
기술 직군 (7급)	기계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재료, 기계요소, 기계제작, 측정, 안전관리(소화), 기계제도 등
	전기	전기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자통신, 회로이론 등

※ 난이도

6급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7급 : 해당분야 고교 졸업자 수준 또는 기능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 첨부#5

장애인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필기전형
장애인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인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답안지 대필	- 기준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준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준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기준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선택형 시험]답안지 대필	의사 진단서 (원본) 기준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 장애인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준 1~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기준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준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준 4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기준 4,5급 1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준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기준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준 2~6급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장애인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면접전형
장애인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비고
지체 장애인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li> <li>·전담도우미 지원</li> <li>·관련서식 확대 제공</li> </ul>	기준 1~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li> <li>·전담도우미 지원</li> </ul>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li> <li>·전담도우미 지원</li> <li>·관련서식 확대 제공</li> </ul>	기준 1~6급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li> <li>·전담도우미 지원</li> <li>·관련서식 확대 제공</li> </ul>	기준 1~6급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li> <li>·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속기사 등)</li> <li>·관련자료 등 서면제공</li> </ul>	기준 2~6급

\*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첨부#6

## 입사포기 각서

성         명 :

생     월     일 :

지     원     분     야 :

수     험     번     호 :

위 본인은 귀사의 2023년 일반직 신입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을 통보 받은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사를 포기하고자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며, 본 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유 :

2023년     월     일

성     명 : \_\_\_\_\_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 첨부#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